

연구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정 2022. 02.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연구전임교원의 자격·임용·신분·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학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임용자격) 연구전임교원의 임용자격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을 준용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연구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의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② 연구전임교원을 임용할 때는 별표1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조건 등) ① 연구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직위는 조교수로 한다.

② 연구전임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 임용한다. 단, 재계약 심사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기준으로 하며, 신규임용 시기로 인하여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③ 연구전임교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연구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만료 통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구전임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신청 서식과 함께 문서로 통지한다.

② 재계약 심사를 받고자 하는 연구전임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사를 임명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재계약 심사) ① 연구전임교원은 별표2 서식에 따라 교양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에 한하여 재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교양대학장은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별표3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재계약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추천서를 참고하여 연구, 강의, 교수자질 및 학교기여도 등을 별표4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별표4의 평정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심사하며,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④ 총장은 재계약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⑤ 재계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양대학장을 경유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① 연구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연구전임교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복무) ① 연구전임교원은 총장이 지정하는 연구, 강의, 교육사업 기획 및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② 연구전임교원의 연간 책임시수는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전임교원의 해외여행은 교원 해외여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구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2조, 교수연구년제시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구전임교원은 교내연구과제 공동연구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 교수회와 학과 교수회에 각각 참여할 수 있다.

⑥ 연구전임교원이 면직을 원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교양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 도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

⑦ 그 밖에 연구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전임교원 임용계약서

상지대학교 총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연구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의한 연구전임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본사항

- 가. 직무구분 : 연구전임교원
- 나. 직 위 : 조교수
- 다.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라. 임용부서 : (교양대학)
- 마. 강의책임시간 : 연간 6시간(주당 3시간)(학부수업 기준)
- 바. 임 무 : 연구, 강의, 교육사업 기획 및 수행

2. 처 우

- 가. “을” 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규임용 시 1호봉부터 시작한다.
- 나. “을” 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될 경우 최초 임용 시의 계약기간을 경력에 포함한다.

3. 복무조건

- 가. “을” 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학기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다.
*교육사업이란 대학의 행정부서(교육연구처, 기획평가처, 학생행복처, 인재개발원 등)의 소관 사업으로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의 개발 및 연구, 대학평가 대비, 구조개혁 분석 및 연구, 취/창업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학생상담 수행 및 연구 등의 사업을 말함
- 나. “을” 은 계약기간 중 상지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존중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4. 재임용 계약

- 가. “을” 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될 수 있다.
- 나. “갑” 은 “을” 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만료 사실과 재계약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
- 다. “을” 은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사를 “갑”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사실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2>

연구전임교원 재계약 추천서

재계약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최초임용일	년	월	일	현직 계약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교양대학장 추천의견서					
<p>※ 교수로서의 자질(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술</p>					
교양대학장					(인)

<별표-3>

연구전임교원 재계약 심사의견서

대상자	소속 :	최초 임용일	평가 부서장 (인)
	직급 :	. . 부터	
	성명 :	. . 까지	
영역	구분	항목	의견
교육사업 기획 분야에 서의 기여도	교육사업 기획	교육사업 기획 실적과 성과	
교육사업 수행 분야에 서의 기여도	교육사업 수행	교육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별표-4>

연구전임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

평 정 대 상 자	소 속	최 초 임 용 일	평정기간	
	성 명			
평정영역 (점수)	평 정 항 목		배점	취득점수
교 육 (15)	① 수업개선 실적		5	
	② 강의평가		5	
	③ 교수법 개발 참여		5	
교육사업 연구 및 지원, 연구성과 (55)	④ 교육사업 기획 성과		25	
	⑤ 교육사업 수행 성과		20	
	⑥ 연구성과		10	
교수자질 및 학교기여도 (30)	⑦ 교수로서의 자질		10	
	⑧ 연구수행능력		10	
	⑨ 임용기간 학교기여도		5	
	⑩ 재계약 시 학교발전 기여 계획		5	
합 계			100	
인 사 위 원 회 위원평가 의 견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연구전임교원 재계약 심사 평정 기준표

평 정 항 목	평 정 기 준					
① 수업개선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중 CQI보고서 제출과 강의개선 노력 항목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QI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구 분	모두 준수	1회 미준수	2회 미준수	3회 미준수	4회 미준수
	점 수	5	4	3	2	0
② 강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3개 학기 평균 강의평가 결과를 전임교원 전체 석차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 					
	구 분	상위 3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70% 이내
	점 수	5	4	3	2	1
③ 교수법개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중 교내에서 개최된 교수법특강, 강의촬영컨설팅 및 교육혁신 워크숍 등 교수법 및 강의개선을 위한 각종 특강 또는 워크숍 등에 참석한 실적 					
	구 분	70%이상 참여	60% ~ 69% 참여	50% ~ 59% 참여	40% ~ 49% 참여	40%미만 참여
	점 수	5	4	3	2	1
	※ 대상 특강 또는 워크숍은 각 행정부서에서 교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체 교원에게 공지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참석여부 확인은 참석자 서명부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부로 증빙하고 서명부가 없는 경우 주관한 행정부서장의 참석확인서로 증빙함					
④ 교육사업 기획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중 교육사업* 기획성과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교육사업이란 대학의 행정부서(교육연구처, 기획평가처, 학생행복처, 인재개발원 등)의 소관사업으로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의 개발 및 연구, 대학평가 대비, 구조개혁 분석 및 연구, 취/창업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학생상담 수행 및 연구 등의 사업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한 교육사업 수(※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건수로 평가. 1건당 1점으로 하고, 20점을 상한으로 함) 					
	구 분	10건 이상	7-9건	4-6건	1-3건	0건
	점 수	20	15	10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한 교육사업의 정책반영 건수(※ 교육부사업 수주건수 					

	<p>또는 교내 교육사업 제도화 건수, 기타 이에 준하는 실적)</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3건 이상</td> <td>2건</td> <td>1건</td> <td>0건</td> </tr> <tr> <td>점 수</td> <td>5</td> <td>3</td> <td>1</td> <td>0</td> </tr> </table> <p>▶ 단, 취/창업 교육과정의 정책반영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름 (※ 정부기관사업 수주건수 또는 교내 교육사업 제도화 건수, 기타 이에 준하는 실적)</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건 이상</td> <td>3건</td> <td>1건</td> <td>0건</td> </tr> <tr> <td>점 수</td> <td>5</td> <td>3</td> <td>1</td> <td>0</td> </tr> </table> <p>※ 취/창업 교육과정은 교과 및 비교과를 모두 포함</p>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 수	5	3	1	0	구 분	5건 이상	3건	1건	0건	점 수	5	3	1	0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 수	5	3	1	0																	
구 분	5건 이상	3건	1건	0건																	
점 수	5	3	1	0																	
평 정 항 목	평 정 기 준																				
⑤ 교육사업 수행성과	<p>■ 임용기간 중 교육사업 수행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p> <p>▶ 교육사업 수행 건수(결과보고서 또는 환류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로서 제도화되어 있는 사업수행 실적을 의미함)</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건 이상</td> <td>7-9건</td> <td>4-6건</td> <td>1-3건</td> <td>0건</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5</td> <td>10</td> <td>5</td> <td>0</td> </tr> </table> <p>▶ 취/창업 교육 수행성과의 경우, 취/창업 교과 및 비교과 수행 건수를 의미함(취/창업 교육의 설계, 수행, 성과를 결과보고서 또는 환류보고서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의미함, 취/창업 동아리의 경우에는 지도 팀수를 건수로 평가)</p>	구 분	10건 이상	7-9건	4-6건	1-3건	0건	점 수	20	15	10	5	0								
구 분	10건 이상	7-9건	4-6건	1-3건	0건																
점 수	20	15	10	5	0																
⑥ 연구성과	<p>■ 임용기간 중 수행한 연구성과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p> <p>▶ 연구업적(저서 및 논문, 발표 등으로 한정함)</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300점 이상</td> <td>300점 미만 200점 이상</td> <td>200점 미만 100점 이상</td> <td>100점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8</td> <td>6</td> <td>0</td> </tr> </table>	구 분	300점 이상	300점 미만 200점 이상	200점 미만 100점 이상	100점 미만	점 수	10	8	6	0										
구 분	300점 이상	300점 미만 200점 이상	200점 미만 100점 이상	100점 미만																	
점 수	10	8	6	0																	
⑦ 교수로서의 자질	<p>■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심사의견서와 교양대학장의 추천서, 그리고 임용기간 중 상벌 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인사위원이 평가함</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able> <p>※ 참고사항</p>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10	8	6	4	2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10	8	6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 총장 및 외부 공공기관장의 표창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학회 및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상을 수상한 경우 - 대학 내 수상 - 주의, 경고 및 징계 -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등 												
<p>⑧ 연구수행 능력</p>	<p>■ 재계약 대상자가 임용기간 중 연구 또는 각종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제고한 연구역량을 토대로 인사위원이 평가함</p> <table border="1" data-bbox="533 674 1423 797"> <thead> <tr> <th>구 분</th> <th>매우 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p>※ 연구역량은 재계약 심사 신청 시 재계약 대상자가 본인의 임용기간 내 연구업적(교육사업 연구 포함) 및 학문적 활동을 문서로 제출하고,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p>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10	8	6	4	2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10	8	6	4	2								
<p>평 정 항 목</p>	<p>평 정 기 준</p>												
<p>⑨ 임용기간 학교기여도</p>	<p>■ 재계약 대상자가 임용기간 중 대내외 활동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항 및 재계약 시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을 기초로 인사위원이 평가함</p> <table border="1" data-bbox="533 1223 1423 1361"> <thead> <tr> <th>구 분</th> <th>매우 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p>※ 임용기간 학교기여도는 재임용 신청 시 재계약 대상자가 본인의 임용기간 내 학교기여도를 문서로 제출하고,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p>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5	4	3	2	1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5	4	3	2	1								
<p>⑩ 재계약시 발전 기여 계획</p>	<p>■ 재계약 대상자가 제시한 학교발전에 기여 계획을 기초로 인사위원이 평가함</p> <table border="1" data-bbox="533 1632 1423 1771"> <thead> <tr> <th>구 분</th> <th>매우 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p>※ 재계약 시 발전계획은 재계약 신청 시 대상자가 재계약 시 발전계획을 문서로 제출하고,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p>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5	4	3	2	1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5	4	3	2	1								